

[사건명] 행심 2016 - 46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1.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5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 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동급생인 ◆◆◆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2016. 10.17. 및 2016.11.1.
두차례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심
의되었고, 그 결과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6. 11.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2016. 9월 청구인은 학교 복도에서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피해학생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어깨를 몇 차례 툭툭 치고 지나갔으며, 이를 장난으로 생각하였고 피해학생이 괴로워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
- 나. 피해학생이 2학년 중순부터 25차례 폭행을 당했다면 2학년 반 친구들이 알았을 것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2학년 반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폭행행위에 대해 조사하였지만 폭행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는 없었다.
-
- 다. 피청구인의 학교폭력 설문조사 결과, 폭행사실에 대해 응답한 학생은 2명뿐이고, 이 설문조사의 대상이 2학년 때 반 학생들이 아닌 현재 피해자와 같은 3학년 반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한 것은 잘못된 절차이다.
- 라.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거짓 진술만으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이 인정하지 않는 2학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25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처분이 아닌, 청구인이 3학년이 된 후 복도에서

피해자를 건드렸다고 인정한 명백한 내용과, 목격자의 진술서에 진술된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조치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 주장하지만, 피해학생은 청구인에게 장난을 치지 못하는 관계였고, 이는 청구인도 인정한 부분으로 장난이 아닌 폭력으로 판단하여 가해조치 결정을 하였다.

다. 피해학생은 신고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고,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태로 신고한 날부터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은 괴롭힘을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진심어린 반성이 부족한 점들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보충서면, 그리고 답변

서 및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 각 구술심리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2학년때부터 때리고 발차기를 하여 피해학생은 괴로워하였지만, 청구인은 이를 장난으로 생각하고 반복하였으며, 피해학생은 청구인과 3학년때 다른반이 되어 괴롭힘이 멈출 것으로 예상했지만 복도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주먹으로 때리는 등 괴롭힘이 계속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은 반가워서 피해학생을 만나면 살짝 치고 발로차고 장난을 친 것이라고 하며, 피청구인이 특별히 거부하지 않고 장난으로 받아주었고,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괴로워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나,

가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리거나 때리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상해에도 해당될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위법/부당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자신의 행위를 학교폭력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이 발생될 우려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청구인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출석정지 5일 처분은 적절하다 할 것이며,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